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용 방법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인원	구 분			필기 시험과목 (1, 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행정 (9급)	교육 행정	125	117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서	1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전산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술 (9급)	공업 (전기)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 경쟁	기술 (9급)	시설 (건축)	2	2		
합 계			146	138	6	2	

※ 교육행정, 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4지 택1형)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시험시간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2001년 1~2월생으로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학력·성별·경력 : 제한없음

※ 단, 사서, 전산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1) 사서, 전산직렬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2)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구분	직군 (계급)	직렬 (직류)	해당(관련)학과	추천대상자(추천요건)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영농학생진전대회 입상자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1) 대상 : 교육행정직렬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 1) 대상 : 교육행정직렬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3)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사. 거주지 제한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 없음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물리 - 총 12과목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됩니다.

5. 시험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5. 1.(화) 10:00	5. 19.(토) 10:00	6. 26.(화) 10:00
면접시험	6. 26.(화) 10:00	7. 7.(토)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24.(화) 10:00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 공고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p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원서접수 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3. 30.(금) 18:00까지
-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8. 3. 31.(토) 09:00 ~ 2018. 4. 2.(월) 18:00까지
- 다. 원서접수 방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 배너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 (<http://edurecruit.pen.go.kr>)에 접속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수수료 : 5,000원
 - 3)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불가】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4)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8. 5. 1.(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 [2018. 7. 7. (토)]까지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6)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7)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산특전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8)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후에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9)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10)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1)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됨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능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차과기사, 차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3%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직렬	직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 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육행정, 사서)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자격 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 시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합니다.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 또는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는 소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건축)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공고문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새소식>고시/공고>공고】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60-061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n.go.kr>) 【새소식>고시/공고>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붙임1】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 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직군(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9급)	시설(건축)	2명

3. 선발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직렬(직류)	필기 시험과목	세부내용
시설(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물리 ◦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 60문항(과목당 20문항) ◦ 객관식 4지 택1형 ◦ 시험시간 60분

- 1)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2)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 가.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1년 1월~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5.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선발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가. 추천 자격요건

- 1) 아래 해당 학과 졸업(예정)자
 - 임용예정 직렬(직류)과 전공학과 대비표

시험구분	직군(계급)	임용예정 직렬(직류)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9급)	시설(건축)	건축(건축설비)

-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도 아래 판단 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함

《 관련 학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참고1) 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 ② 직무분야별 관련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9호)' (참고2)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18. 1. 1. 현재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 중퇴자 포함]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8. 1. 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2) 위 해당학과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의 종류는 본 공고문의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표” 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격증 소지여부는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판단)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1,2학년 포함),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1학년 포함) 성적까지 산출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고에서 실업계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점수계산 방법 】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text{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sum(\text{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div \text{총 이수과목} \geq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text{성취도 A 비율(\%)} = (\text{성취도 A 이수과목 수} \div \text{총 이수과목 수}) \times 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text{평균 석차등급} = [\sum(\text{과목별 단위수} \times \text{과목별 등급})] \div \sum \text{과목별 단위수}$$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이상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자

나. 추천 방법

- 해당 학교는 자체 추천계획을 세워 많은 졸업(예정)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천자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자격요건 등에 따라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추천해야 함

다. 추천 인원 : 제한 없음

라.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름

6. 추천서류 사전 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3. 12.(월) 09:00 ~ 3. 15.(목)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일괄 제출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2018. 3. 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우편번호 : 47119)

라. 제출서류

- 1)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서식 1, 서식 2)
-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3) 성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기 취득자 : 관련서류 제출 시 제출
 - 자격증 취득예정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4)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5)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생활기록부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6) 각서(서식 3) 1부

마.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051-860-0617)

7. 응시원서 접수

가. 대상자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인터넷 접수

※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 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서접수

나. 접수방법

-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름
 - 원서접수 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3. 30.(금) 18:00까지
 - 원서접수 사이트 : [http:// edurecruit.pen.go.kr](http://edurecruit.pen.go.kr)

8. 기타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응시원서 미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추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제공

<서식1>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 ○ ○ 고등학교 (직인)

(담당자 : , 학교 연락처 : , 핸드폰 :)

2. 추천대상자 명단

- 기능경기대회 등 입상자

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졸업일	대회명	수상 내역	수상일
1 (예시)	이몽룡 (199*.*.*.**)	남	시설 (건축)	건축과	2017.2.20.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16.1.15.

- 성적우수자

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성적*			졸업 (예정)일	
1 (예시)	성준향 (199*.*.*.**)	여	시설 (건축)	건축과	성취평가제 미적용	평균 석차비율	5%	2013.2.20.	
2 (예시)	홍길동 (199*.*.*.**)	남	시설 (건축)	건축과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석차)	1 (1/50)	2018.2.20.
							평균 석차비율	1%	
						전문 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등급 이상	O/X (총10과목)	
						성취도 A등급 비율	70% (7/10)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
보통교과 : 평균 석차비율이 50%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이내인자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추천현황

직렬(직류)	학교 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시설(건축)		

<서식2>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 추천서**

추천 직렬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학력 사항	출신학교			
	소재지			
	학과(정원)	학과 (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 (졸업예정) 년 월		
학업 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 명)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석차등급 전문 교과 평균B이상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 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p>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align="right">2018년 월 일</p> <p align="right">○○○고등학교장 (직인)</p> <p align="right">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p>※ 추가 제출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성적증명서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5.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6. 각서 				

<서식3>

각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26)	종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498)					서비스 분야(32)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14 건설(6/99)	141 건축(29)	84	28	111	115	160	10	10	3	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참고2>

직무분야별 학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14 건설	141 건축	<p>가구디자인(과,전공,학과), 가구조형(과·전공), 가정관리학과, 가정주거학과, 가족주거학전공, 건물관리과, 건설·건축계열, 건설·응용화학공학계열, 건설·환경·화학공학과, 건설계열, 건설계열건설전공, 건설계열학과,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설공학(과,과군,학부,전공,계열), 건설공학교육(과·전공), 건설관리계열, 건설관리시스템전공, 건설교통공학(계열,과,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정보과, 건설기계전공, 건설농업기계전공, 건설도시공학(과,부,학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건설디자인계열, 건설리모델링과,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계전공, 건설시공감리전공, 건설시공전공, 건설시스템(과,공학과,공학부,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설재료공학과, 건설전공,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건설컨설팅전공, 건설토목과, 건설토목환경공학과, 건설학과, 건설환경(계열,공학과,공학과,공학부,전공,과), 건설환경건설공학부,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환경설계전공,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공학전공,과,학과), 건설환경정보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 건축·토목설계학부, 건축계열, 건축계획전공, 건축공간디자인계열, 건축공학(과·부·전공), 건축공학계열, 건축공학교육과,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 건축공학·빌딩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설비공학부, 건축과, 건축기계설비공학(과·전공),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건축디자인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디자인·CAD전공, 건축리모델링(과,전공),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과,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 건축물관리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과,부),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산업학(과·전공), 건축생활디자인계열, 건축설계/CAD전공, 건축설계공학(과·전공), 건축설계기술전공, 건축설비(공학과,공학전공,과), 건축설비·기계공학부, 건축설비디자인과, 건축설비설계학(과·전공),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건축설비자동화와, 건축설비학(과,전공), 건축설비환경과, 건축소방설비(학)(과·부·전공),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행정학(과·전공), 건축시공(과,전공), 건축시스템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시스템공학부, 건축시스템관리과, 건축실내건축학부, 건축실내디자인(과,전공,학부),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 건축·실내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 건축·환경디자인학부, 건축안경환경학부, 건축엔지니어링전공, 건축인테리어(계열,과,전공,학부),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과, 건축장식과, 건축전기설비과, 건축전기시스템과,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조경학부, 건축조형계열, 건축조형예술계열, 건축컴퓨터공학과, 건축토목(계열,공학과,학부,과), 건축토목도시공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과,학부), 건축토물디자인과, 건축학(과·부·전공), 건축화학재료공학계열, 건축환경(과,학과,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학과·계열), 건축환경생명공학부, 건축환경설계과, 건축환경설비(과,학과), 건축환경시스템(과,학부), 건축환경토목공학과, 건축환경화학공학과, 공간관리계열, 공간디자인(학부,전공,학과), 공간리모델링과, 공간사회환경공학부, 공</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간시스템공학부, 공간연출과, 공간연출디자인(과,전공), 공간예술과, 공간조형디자인전공, 공간조형학부, 공간진단학부, 공간환경(전공,학부),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전공), 공연·영상무대디자인(과전·전공), 그린에너지설비(과·전공), 그린인테리어과,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기계공학건축학과, 도시건축공학부,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전공, 디지털디자인·건축학과, 디지털인테리어과, 리모델링(과, 건축과, 인테리어계열), 목조건축인테리어(과·전공), 빌딩설비디자인과, 빌딩설비시스템(과,전공,코스), 산업건축학과, 산업토목(과,학과), 생활경영학과, 생활과학(과·전공·부),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디자인(학)(과·전공), 생활복지주거학과, 생활주거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설비(계열·과·전공), 설비디자인(과·전공), 소방건설계열, 소비자자동주거학과, 소비자주거학과, 시각디자인·실내디자인·애니메이션전공, 실내건축(학)(과,전공), 실내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과,학과,전공,계열),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실내디자인(학)(과·전공·부), 실내디자인공학과, 실내리모델링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리모델링과, 실내장식과, 실내장식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학)(과,전공), 실용건축과, 아동주거학전공, 웰빙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설계열, 인테리어·건축계열,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인테리어·리모델링전공, 인테리어건축(과,전공), 인테리어건축토목(과,계열), 인테리어건축학전공, 인테리어리모델링(과,전공), 인테리어산업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인테리어코디네이션(과,부,전공), 인테리어패션디자인((학과, 전공),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재료환경건축공학(과,과군), 전산응용건축전공, 전통건축학(과,부,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조명인테리어(학)(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및실내계획전공, 주거실내디자인학과, 주거·가족복지(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인테리어디자인학과, 주거학(과·전공), 주거환경(학과,전공), 주거환경디자인전공, 주거환경소비자과, 주생활학(과·전공), 주택(전공,과), 지역건설공학(과,전공), 지역기반공학과(전공), 축조경토목공학부, 친환경건축문화학(과·전공), 컴퓨터건축설계과, 컴퓨터응용건축과,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전공), 테마파크디자인과, 토목·건축·도시정보공학과, 토목·건축·환경공학부, 토목건설과, 토목건설시스템과, 토목건축공학(과,부), 토목건축측지공학과, 토목건축환경공학과, 토목환경건축공학(과,과군), 토털인테리어전공, 패션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주거환경디자인학과, 한옥문화산업(과·학과·전공), 해양건축학과, 해양공간건축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건설정보학과</p>

【붙임2】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

1. 대상시험 :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2. 지원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3.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구비 서류
시각장애	시각장애(1-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시각장애 6급은 의사진단서 1부 필요)
	중증 뇌병변 장애(1-3급), 중증 상지지체 장애(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 1.5배 연장 - 대필(선택형 시험)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	경증 뇌병변 장애(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 시험시간 : 1.5배 연장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경증 상지지체 장애(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하지지체 장애	- 별도 1층 시험실 배정	장애인증명서 1부
청각장애	2급-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구비 서류
기타 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시험시간 연장은 불가)	의사소견서 1부
	임신부	- 별도 1층 시험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시간에 포함)	의사소견서 1부

※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 (단,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동행 보호자 : 시험실 입실은 제한, 시험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4. 편의제공 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3. 30.(금)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2018. 3. 3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우편번호 : 47119)

라. 제출서류

-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6 참조)
- 2) 장애인증명서 1부.
- 3)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유의사항

-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제공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 3)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시에는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소견)서를 따름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장애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4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4)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 중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의사진단(소견)서, 장애인증명서〕제출을 면제합니다.
- 5) 대필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OMR 답안지 이기는 시험종료 후 담당 시험감독관이 수험생 입회하에 이기합니다.
- 6)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 후, 유선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51-860-0617)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 시각장애 〕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시각장애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5배)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중증 뇌병변·상지지체 장애 1 ~ 3급]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급 상지지체장애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5배)		
	대필(선택형 시험)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경증 뇌병변·상지지체 장애 4 ~ 6급]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급 상지지체장애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시험시간 연장(1.5배) <small>(경증뇌병변 장애인만 해당)</small>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지체 장애]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지체 장애	별도 1층 시험실 배정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 장애 2 ~ 6급]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청각장애 ()급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6>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 장애, 임신부)

- 응시직렬 : (응시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5월 19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 받고자 신청합니다.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 의사소견서 1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